

1. 개정이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에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기준 중 제3호 “임업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을 삭제(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별지

2) 입법예고(2026. 2. 9. ~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

구분	이행기준
1.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2.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영림기록의 작성·보관	영림기록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
3. 삭제	
4. 영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판매단계의 유해물질(농약은 제외한다) 잔류허용량의 안전기준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임산물의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임산물의 유통·판매단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판매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